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등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2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등	2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2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뽕뽕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응급구조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6조의5(응급구조사중앙회와 지부)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단체(이하 “응급구조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u> <u>②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u> <u>③ 응급구조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④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6조의6(설립 허가 등) ①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제36조의7(협조 의무)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6조의8(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6조의7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

현행	개정안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u>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u>
1. ~ 5. (생략)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 ----- ----- ----- ----- -----.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7. (생략)	<u>5의2. 응급구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u>
② ~ ⑤ (생략)	6.·7. (현행과 같음)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55조의2(자격정지 처분의 요구)</u> <u>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은 응급구조사가 제55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5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하나로, 동법 제41조제1항에 의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개정안의 내용 중 먼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 관련 법정단체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의사, 약사 및 의료기사 등의 다른 보건의료직군¹⁾의 단체 현황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1) 보건의료직군의 범위는 그 해석 및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사자를 통칭하기로 함. 한편, 동법 제2조제3호마목의 종사자(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의 경우 그 특성상 응급구조사의 의료분야 종사자로서의 성격과 다소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동 보고서에서는 함께 다루지 않기로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표 1] 보건의료직군 단체 및 법적 근거 (2025. 7. 현재)

직종	단체명	설립일	법적 근거
의사	대한의사협회	1956. 1. 12.	「의료법」 제28조
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952. 3. 16.	
한의사	대한한 의사협회	1952. 12. 16.	
조산사	대한조산협회	1955. 3. 24.	
간호사	간호사중앙회	1957. 7. 26.	「간호법」 제18조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협회	1974. 12. 24.	「간호법」 제20조
응급구조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999. 1. 8.	「민법」 제32조
약사	대한약사회	1955. 1. 24.	「약사법」 제11조
한약사	대한한약사회	2006. 5. 15.	「약사법」 제12조
임상병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1965. 12.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	1965. 11. 25.	
물리치료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66. 11. 18.	
작업치료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993. 4. 2.	
치과기공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1966. 7. 20.	
치과위생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982. 7.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1977. 6. 21.	
안경사	대한안경사협회	1976. 4. 19.	

자료: 각 법률 및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 보건의료직군 중 응급구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과 같은 개별법을 근거로 법정단체가 설립되어 있어,

보건의료직군 중에서 응급구조사만이 개별법에서 법정단체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응급구조사 단체의 설립근거를 「민법」이 아닌 개별법에 규정할 경우, 응급구조사 단체에 응급구조사 자격관리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구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응급구조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응급구조사의 자격 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점,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기타 보건의료직군에 있어 유사한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첫째, 기타 보건의료직군의 유사 규정*에서 품위손상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인 반면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가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행 「응급의료법」 제55조가 기타 보건의료직군과 달리 응급구조사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법률에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자격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응급구조사의 위반행위 중 어떤 것을 각각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실제 행정현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분기준이 명확히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자격취소는 해당 업무를 근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자격정지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정도가 크므로, 자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함의 정도에 따라 어떤 행위가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에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제66조의2 및 제80조의3,
「간호법」 제21조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의2

□ 둘째, 개정안에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판단·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기타 보건의료직군에서도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66조제2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의료기사법」 제22조제2항

□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설립 및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안 진행과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같이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55조제1항제5호의2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안 제55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에 품위손상행위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현행법 제55조제1항의 행위 주체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포괄하는 ‘응급의료종사자’임(「응급의료법」 제2조제4호).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의 면허·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55조제1항제5호의2를 “응급구조사가 그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5의2. 응급구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 셋째,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행정구역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시 이에 특별자치시²⁾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간호법」(2025. 6. 21. 시행) 제18조제4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는 지부의 의무적 설치 행정구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현행 「의료법」 제28조제5항 및 「의료기사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의료기사등의 중앙회는 의무설치 행정구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넷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임.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군(의사·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등)은 법률에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법」 제18조제9항에서 간호사중앙회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응급구조사중앙회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³⁾

2) 세종특별자치시

3) 다만, 현행 「응급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현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안 제55조제1항제5호의2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추가되는 ‘응급구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 필요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유지,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자격자의 자정작용, 유사단체 난립 방지 및 응급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강화 등을 위하여 법정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가 필요하며,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을 통해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9

【 조문자료 】 (법률명 가나다순)

「간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한약사회) ①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윤리 확립, 한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약사회가 설립되면 한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한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앙회)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④ (생략)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 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 10. (생략)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